

의안번호	2203370
의 퇴 인	김미애 의원
회 답 일	2024. 11. 13.
추 계 번호	24B33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명칭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조정 업무에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추가할 경우,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확대, 직원 3인 증원,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6억 700만원(연평균 3억 2,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안 제44조의10) 관련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온라인분쟁조정 위원회 운영비 증가	29	29	29	29	29	145	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3인 증원 인건비	210	218	226	235	244	1,133	227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252	0	25	26	26	329	66
합 계	491	247	280	290	299	1,607	322

주: 1.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운영 사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증가, 직원 3인 증원,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등의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의10(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u>허위조작정보</u>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u>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u>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함(제1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명칭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조정 업무에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추가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4조의10(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등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4. 1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명칭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조정 업무에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추가 (안 제44조의10제1항)

-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명칭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조정 업무의 범위에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추가하는 것으로,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 업무의 증가 및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5,405건으로, 연 평균 1,800여건을 처리하였고, 분쟁조정부 운영비로 2023년 기준 3,600만원을 집행하였음

[표 2] 최근 3년(2021~2023)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처리 현황

(단위: 건)

연 도	합 계	접수처리								사무처 답변 등
		소 계	조정전 합 의	조정결정	정보제공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기타 ¹⁾	
합 계	5,405	1,784	34	0	360	910	141	120	219	3,621
2021	2,063	548	3	0	141	202	79	66	57	1,515
2022	1,802	551	13	0	118	285	33	26	76	1,251
2023	1,540	685	18	0	101	423	29	28	86	855

주 1) 기타는 조정의 거부 등 건수임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 3] 최근 3년(2021~2023)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분쟁조정부 운영비	38	37	36
분쟁조정 제도 홍보	25	—	—
합계	63	37	36

주: 인건비 미포함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1	2.0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2	3.6	3.9	3.8	3.8	3.8	3.8

- 개정안에 따라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업무에 추가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업무가 증가할지 알 수 없으나, 기존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 사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안전 검토, 자문 변호사 운영 및 조정 회의비 등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운영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증원 인건비, 현재 운영 중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함

[표 4]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 사례

- 현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안전 검토 및 자문사례비는 변호사 5인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
- 조정회의의 경우 현재 연 22~24회 개최하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1~1.5시간, 회의참석 수당은 10만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4~5급)의 연 인건비는 7,000만원 수준
-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운영 중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안전 검토 및 자문 사례비, 조정회의 참석 수당 등 2,900만원/연 추가
 - 안전 검토 및 자문사례비: 30만원 $\times$ 5인 $\times$ 12월 = 1,800만원
 - 회의참석 수당: 10만원 $\times$ 5인 $\times$ 22회 = 1,100만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3인 증원 인건비) 현재 명예훼손분쟁조정과 이용자정보제공청구 등 분쟁조정부 업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6인이 수행 중임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업무 처리를 위해 직원 3인을 충원하는 것으로 가정
 - 인건비: 7,000만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4~5급 기준) $\times$ 3인 = 2억 1,000만원/연
 -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해당 시스템에 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 조정 추가를 위한 시스템 개발비, 서버 구매 비용 및 유지관

리비 등 반영

- 시스템 개발비: 2억 200만원
- 서버(H/W) 구매(1EA): 5,000만원
- 유지관리비: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효율(10~15%)에 따라 10% 적용²⁾
- 이때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시스템 고도화가 완료되는 2025년 이후 무상 하자 보수 기간(1년)을 거쳐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³⁾
- 유지·관리비용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5]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시스템 개발비(고도화) 산출 내역서

(단위: 원)

구분	평균임금(월)	인원	개발 기간	소계
IT PM	9,525,983	1	5	47,629,915
시스템SW 기술자	5,821,743	3	5	87,326,145
IT지원 기술자	4,493,456	3	5	67,401,840
합계				202,357,900

주: 2024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적용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업무에 허위 조작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추가할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6억 700만원(연평균 3억 2,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2) 효율제 유지관리비는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시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용효율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효율(10~15%)을 준용(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2년 2차 개정판)」)

3)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S/W의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하도록 함

[표 6]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 업무 범위 확장 관련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온라인분쟁조정 위원회 운영비	29	29	29	29	29	145	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3인 증원 인건비	210	218	226	235	244	1,133	227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252	0	25	26	26	329	66
합 계	491	247	280	290	299	1,607	322

주: 1.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운영 사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증가, 직원 3인 증원,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등의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운영 사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증가, 직원 3인 증원,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등의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